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56 발의연월일: 2021. 8. 23.

발 의 자:인재근·서영석·최연숙

최종윤 · 소병훈 · 최혜영

이장섭 · 김한정 · 송갑석

조오섭 · 문진석 · 윤영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함.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. 다시 말해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라는 심리적 제재만 가능하고 경제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

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 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, 제56조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과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"로 한다.

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불응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) ① ~ ⑥ (생 략)	제1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.
제56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	제56조(과태료) ① 제14조의2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불응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<u>①</u> · <u>②</u> (생 략)	<u>②</u> · <u>③</u> (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부과·징수한다.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